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6. 13 선고 2024가단211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20. 접수 제330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 1) 소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1999. 1. 19.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2) D은 원고에게 2023. 10. 16. 당시 합계 17,156,068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4. 2. 15. 당시 합계 25,282,951원(원금 24,045,198원, 이자 651,005원, 수수료 253,434원, 연체료 333,314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3)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24차전17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4. 1. 4. 'D은 원고에게 24,859,665원 및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2%, 516,130원에 대하여는 202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 4,356,711원에 대하여는 202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5,972,357원에 대하여는 202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4. 1. 23. 확정되었다.

나. D의 증여

- 1) D과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D과 피고의 아버지인 망 E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94년경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D과 피고의 어머니이자 망 E의 처에게 상속되었다가, D이 1999. 8. 19.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9. 8.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2) D은 2023.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3.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D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 당시 D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소재지	금액(원)	채권자명	발생일자	금액(원)
F아파트 G호	40,000,000	J조합	2004. 9. 7.	11,000,000
충주시 H	40,000,000	K조합	2015. 2. 24.	29,000,000
충주시 I	3,578,000	L카드	2021. 2. 24.	4,167,000
		M	2021. 3. 9.	13,000,000
		K조합	2021. 3. 11.	6,980,000
		N카드	2021. 3. 23.	7,267,000
		L카드	2021. 3. 24.	4,118,000
		A	2023. 1. 10.	16,040,000
		O카드	2023. 1. 10.	16,719,000
		L카드	2023. 8. 28.	1,650,000
		O카드	2023. 10. 5.	400,000
		A	2023. 10. 5.	600,000
		N카드	2023. 10. 16.	400,000
합계	83,578,000	합계		111,34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D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1)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일자 2013. 9. 19.이고, 그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 2) 설령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일자가 2023. 10. 16.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시기에 D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다른 일자에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실제 일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일자가 등기원인일자인 '2023. 10. 16.'이 아니라 '2013. 9. 19.'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일자가 2013. 9. 19.이라고 주장하나, D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2023. 10. 20.)는 피고 주장 위 증여일자(2013. 9. 19.)로부터 무려 10년 남짓 경과한 시점으로,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반면에 위 등기원인일자(2023. 10. 16.)로부터는 4일 경과한 시점으로 거래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

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증여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사이에 무려 10년 남짓의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D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증여동의서(을 제1호증)에는 “주소: 충북 충주시 P, 건물면적: 60평,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위 주소지의 재산을 손자가 있는 막내 C(피고)에게 증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 9. 1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증여동의서에 D이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위 증여동의서가 2013. 9. 19.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증여동의서가 2013. 9. 19. 작성되었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과 피고가 형제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별지목록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144㎡
2. 충청북도 충주시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시멘브릭조 스테이지봉 단층주택 59.85㎡
부속건물
시멘브릭조 스톱지봉 단층창고 31.2㎡

